



완전 평등 실현한 중국의 가족법

남편 · 아내 가족내 동등지위 구체적으로 보장

중국은 지난 6·4 사태 이후 정치적인 폐쇄성을 더해 가고 있다. 그러나 대외개방정책 이후 비교적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삶의 형태들이 사회의 다른 어떤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남녀 평등의 진전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중국의 결혼과 가족에 나타난 새로운 경향들을 북경의 〈중국부녀〉사가 펴낸 〈New Trends in Chinese Marriage and the Family〉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결혼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가장 중대한 사건이며, 가족은 사회의 핵심이다. 중국이 봉건사회였던 시절에는 가부장적인 가족 체계가 중대 결혼과 남성 소비니즘 그리고 여성의 요구와 가정에 대한 무관심을 가져왔다.

결혼과 가족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건설 이래로 중국 정부의 주권심이 되어 왔다. 법적인 측면의 접근 중 가장 중요한 첫번째의 것이 1950년에 제정된 혼인법이다. 이 혼인법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결혼할 권리와 일부다처제의 금지, 성간의 완전한 평등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 등을 규정해 놓았다. 결과적으로 혼인법은 봉건적인 결혼 관습을 종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호 감정에 기초한 결혼, 어른에 대한 존경 그리고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들을 고무시켰다. 30여 년이 지난 오늘 이 법률은 사회주의 하에서 발생한 더 큰 변화들을 고려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했고, 새로운 혼인법이 1981년에 만들어졌다. 이는 초기 법률의 기본적인 정신과 규정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

다음은 1980년 9월 10일 제5차 전국인민회의에서 채택되어 198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가족법이다.

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결혼과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 법률이다.
제2조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과 일부일처제 그리고 성간의 동등한 권리를 기초로 한 결혼만이 효과를 발휘한다. 여성, 어린이 그리고 노약자의 법적인 권리와 이해는 보호되어야 한다. 가족계획을 실천한다.

제3조 제3자에 의해 강요된 결혼이나 매매혼 그리고 결혼의 자유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된다. 결혼과 관련된 금전이나 선물의 지나친 요구는 금지된다. 중혼은 금지된다. 가족 내에서의 학대와 유기는 금지된다.

의지에 기초해야 한다. 어느 한편이 강요할 수도 없으며 제3자의 간섭도 허락되지 않는다.

제5조 결혼은 남자의 경우 22세, 여자의 경우 20세 이하일 경우는 할 수 없다. 늦은 결혼과 늦은 출산을 장려한다.

제6조 다음과 같은 경우의 결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 (1) 남녀가 3촌에 가까운 혈연관계를 가진 경우
- (2) 한편이 불치의 나병이나 기타 의학에서 결혼에 부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

제7조 결혼을 원하는 남자와 여자는 직접 결혼등록소에 가서 등록할 것이다. 만약에 약혼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등록은 인정되어 질 것이며 결혼증명이 가능하다. 남편과 부인의 관계는 결혼증명을 획득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제8조 결혼이 등록되어진 후에는 서로 원하는 바에 따라 여자는 남자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남자는 여자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3장 가족 관계

제9조 남편과 부인은 가족에서 동등한 지위를 누린다.

제10조 남편과 부인은 각기 그들의 자신 가족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11조 남편과 부인 모두 생산에 참여하거나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할 자유를 갖는다. 어느 한편도 다른 한편을 제약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제12조 남편과 부인은 가족계획을 실천할 의무를 갖는다.

제13조 결혼 기간 중에 획득한 재산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동으로 소유한다. 남편과 부인은 공동소유 재산의 관리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행사한다.

제14조 남편과 부인은 각기 서로를 보조하고 지원할 의무를 가진다. 한편이 이러한 의무를 실행하는 데 실패했을 때 지원과 보조를 필요로 하는 다른 한편이 지원과 보조 비용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부모는 그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의무를 가지고 자녀들은 그들이 부모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의무를 가진다. 부모가 이러한 의무를 실행하는데 실패했을 때, 연소자이거나 생활 능력이 없는 자녀들은 부모



휴일에 외식을 즐기고 있는 가족

의 지분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자녀가 그들 부모를 지원하고 보조할 의무를 실행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 일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자신들의 생계에 곤란을 느끼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비용의 지분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유기에 의한 유아살해와 유아에게 해를 줄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이 금지된다.

제16조 어린이는 아버지의 성이나 어머니의 성을 택할 수 있다.

제17조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도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미성년인 자녀가 국가나 다른 집단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때 부모는 모든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 배상할 의무를 가진다.

제18조 남편과 부인은 상대방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를 가진다. 부모와 자녀는 상대방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서자는 적자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어떠한 사람도 그들에게 해를 주거나 차별할 수 없다. 서자의 아버지는 그들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생계와 교육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제20조 국가는 양자를 보호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 법의 관련 조항들은 양부와 양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도 적용된다. 양자와 그들의 친부모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양자 관계가 성립한 이후에는 소멸한다.

제21조 의붓 부모와 의붓 자식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학대와 차별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 법의 관련 조항들은 의붓 아버지나 의붓 어머니 그리고 의붓 아버지로부터 교육과 보호를 받는 의붓 자식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도 적용된다.

제22조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조부모와 외조부모는 미성년자이면서 그들의 부모가 사망한 손자나 외손자를 양육할 의무를 가진다.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손자나 외손자는 그들의 자녀가 사망한 조부모나 외조부모를 지원하고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제23조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형제들은 부모가 사망했거나 경제능력이 없을 경우 동생을 부양할 의무를 가진다.

(제4장 이혼, 제5장 부칙 계속)

(이숙진/대륙연구소 연구원)

여 성 논 단

무력한 자의 폭력

장필화/이대교수, 여성학



또 하나의 충격이다. 딸을 낳았다고 남편의 구박을 받은 어머니가 생후 2개월 된 딸의 목숨을 끊었다. 죽이는 것과 죽임을 당하는 현실에 익숙하도록 강요되고 이에 둔감해지고 있는 우리들로서도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다.

인류의 역사에는, 아니 비근한 예로 지난 10년간 중국에서는 대량의 여아살해가 있어 왔다. 가속화하는 인구팽창의 위협속에서 막강한 행정력으로 집행되는 한가구 한자녀 정책이 딸보다는 아들 하나를 기원하는 부모들로 하여금 이런 일을 저지르게 했다.

분명 최근의 사건은 중국의 경우와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핵심에 있어서는 똑같은 점을 읽을 수 있다. 남성이 우선시되는 사회에서, 남성이 중요한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공통된 현상이라는 점이 그렇다. 가부장제 사회의 당연한 귀결인 이 사건은 그러나 전통적 가부장제 사회와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섬뜩한 예감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다.

사실 우리는 전통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여아 살해가 자행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그토록 중요했던 당시 사회에서도 이

나 살해하지는 않았다. 아들이 정 없는 경우 양자입적의 절차에 관한 복잡하고 상세한 논의가 왕조실록에 상당한 비중으로 실려 있는 점을 보면 간접적이거나 이런 심증을 가질 수 있다.

남녀평등의 이념이 활발히 논의되고 여성의 지위향상론까지 대두되는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깊게 재검토해야 한다.

여성으로 하여금 어머니로 하여금 이러한 극단적 상황까지 몰고 가게 한 우리 사회와 남아 선호를 부추기고 살해에 동참한 또다른 '숨은 살해자'들의 엄청난 범행을 엄중히 꼬집고 넘어가야 한다.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

널려 있는 숨어 있는 살인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절실하다.

이는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통과의식'이 되어야 한다.

또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딸의 목을 죄어야만 했던 가련한 어머니에 대한 이해와 무서운 범죄가 저질러진 상황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모진 모성을 쉽사리 매도하거나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다며 호된 질책을 가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어머니를 통해 보 수 있는 '무력한 자의 폭력'

한다고 생각한다. 이 여성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대부분은 미친 듯 돌아가는 세상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하는 마음을 갖는다. 우리 앞에 드러나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 무력감을 경험하지 않기로 정말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여성들은 그들에게 날로 잔인하게 자행되는 성폭력과 아들 낳기를 강요하는 사회의 폭력 앞에서 날마다 견디기 힘든 무력감과 위축감을 느끼며 살아 가야 한다.

무력감은 폭력과 직결된다. 무력한 자는 폭력의 대상으로 스스로를 설정하거나 자기보다 더 무력한 상대에게 또다른 폭력을 가하기 마련이다. 어찌 보면 이 어머니는 무력한 자신에게 의지해 살고자 하는 어린 생명을 앞에 두고 차라리 목숨을 끊어 주는 게 더 모성적이라는 궤변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

자살과 타살 그리고 집단자살 등의 죽고 죽임은 이러한 무력감의 표현이라는 연속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사건을 고립된 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와 유사한 무력감을 느끼며 사는 여성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힘을 주는 제도적인 변화 없이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심화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다.